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6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287개소의 관리

나.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복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계	287	6	20	24	31	27	8	33	23	14	39	25	37
마을 상수도	112	4	10	5	5	13	3	17	12	7	19	10	7
소규모 급수시설	175	2	10	19	26	14	5	16	11	7	20	15	30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 (5년간)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마. 수탁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저수조청소업 소지 업체

바. 주요 위탁내용

- 배수지 청소,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점검
- 취수원, 배수지, 급수설비 점검 및 긴급보수
- 누수 동결 등 수시정비 및 긴급 보수
- 각종 민원처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참조

- 「수도법」 제47조 1항, 제55조 1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관리의 위탁)

나. 추진일정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 7월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 : 2022년 8월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22년 9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10월
- 위탁계약 체결 : 2022년 12월
- 위탁계약 운영 : 2023년 1월

다. 소요예산 : 연간 350,000천원 정도

라. 위탁운영 계획 : 붙임참조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기간 만료(2022.12.31.)예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수도법」 제47조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55조 1항
 - 시장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II 시설 현황

-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계	287	6	20	24	31	27	8	33	23	14	39	25	37
마을상수도	112	4	10	5	5	13	3	17	12	7	19	10	7
소규모급수시설	175	2	10	19	26	14	5	16	11	7	20	15	30

※ 마을상수도 : 100명~2천500명, 20m³/일이상 소규모급수시설 : 100명미만, 10m³/일 미만
(2022년 286개소 ⇒ 2023년 287개소 / 제외-가조대초, 추가-위천황산, 신원소룡)

III 위탁개요

○ 현 위탁업체 현황(2022년 계약기준)

수탁자	위탁대상	위탁기간	계약금액
(주)남강건설(대표 이상훈)	147개소	2018. 1. 1. ~ 2022. 12. 31.(5년간) ⇒ 연간계약시행	162,939천원
(주)다보건설(대표 이명호)	139개소		155,752천원
계	286개소		318,691천원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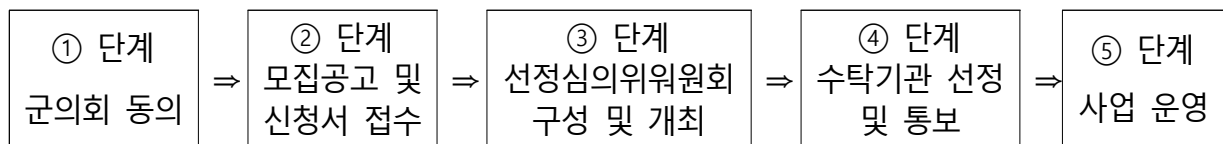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

○ 주요 위탁내용

-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
-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긴급보수·정비
-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
- 배수지 청소(연2회)
-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잡목 제거 등 환경미화
-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운영성과 평가자료 제출(연1회)
- 취수시설, 송·배수관로 누수 및 동결 등 점검 관리(월1회)
- 명절, 동절기, 갈수기 등 비상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수시)
- 각종 민원처리 등

○ 위탁 추진절차



V

세부추진계획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2. 7월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 : 2022. 8월
- 모집공고 및 1차 평가 : 2022년 9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2차평가) : 2022년 10월
- 위탁관리업자 지정 및 계약 : 2022년 11월

【수도법】

제3조(정의)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飲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47조(마을상수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 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협약의 체결 등)

-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관리의 위탁) (전문개정 2013.8.14.)

-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 4조 (시설의 관리)

-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3조 (평가 및 지정)

- ①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 ③ 군수는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 ⑤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8.14.)